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 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12 . 18 평창군수(기획실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12.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가. 제 안 이 유

-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 요 내 용

- 향토학사 입사에 관한 신청기간, 자격, 선발인원등을 매년 1월중에 공고토록 함(안 제3조)
- 입사신청 자격을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함 (안제4조)
- 입사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함(안제6조)
-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으로 원칙으로 하고, 선발 과 예비인원에 대하여 규정함(안제7조 및 8조)

- 입사생을 가정환경, 성적, 기타조건에 의한 점수제로 환산하여 선발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본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에 출연금 2억원을 평창군이 출연하게 되자 이에 필요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사생 선발공고는 1월중에 군수가 실시하고 입자자격 신청대상은 평창군에 주고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서 강원대학교 뿐 만이 아닌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하며, 선발시기는 매년 2월초까지로 하고 있음. 선발인원은 남학생10명, 여학생10명,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의 범위안에서 적정인원을 구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생 선발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있으며 입사기간은 당해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 본조례는 출연금 출연에 따른 선발기준 마련을위한 것으로 타관련법 저촉, 자구등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인데	○ 한림대나, 한림전문대등 추천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타학교도 학생도 입사가 가능한지?</p> <p>○ 제9조 제2항중 생활보호대상 와 가정환경이 어려운학생 이 유사한데 이에 대한 생각 은?</p>	<p>소재 재학대학생은 모두 가능 하며 이안은 강원대학교와 협의 한 사항임</p> <p>○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을 말하며 가정환경을 둔 이유는 국가유공자 자녀중에서도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임.</p>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입사생 선발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기숙사 입사생과 구분을 명확히하기 바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1부 . 끝 .